

(2023학년도 제6차)

규정심의위원회

- 일시: 2023. 5. 18.(목), 14:10
- 장소: 기획예산팀 회의실(본관 1층)
- 심의 안건

1. 「성과급적 연봉제 정년트랙 전임교원인사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교원인사팀)
- 1-1.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인사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교원인사팀)
2. 「장애학생지원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장애학생지원센터)
3.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운영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산학협력실)
4. 「우석대학교 학사운영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학사관리팀)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성과급적 연봉제 정년트랙 전임교원인사규정」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인사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교원인사팀	관련부서	해당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 없음		
대학평의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상위 법령(사립학교법) 및 법인 규정(교원징계위원회규정)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 일치화		
관련근거 (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교원징계위원회규정」 제7조(징계의종류)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교원이 징계로 인하여 ‘정직’ 처분을 받을 시 보수의 전액을 감하도록 함		
기대효과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O)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 (포털 및 홈페이지)	진행예정	
	다. 의견제출 유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반영예정	
첨부자료	1. 「성과급적 연봉제 정년트랙 전임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산·구조문대비표 1부. 2.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산·구조문대비표 1부.		

「성과급적 연봉제 정년트랙 전임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산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의 감액) ①정직에 대해서는 정직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 를 감한다. ②감봉에 대해서는 감봉기간 중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제29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의 감액) ①정직에 대해서는 정직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②현행과 같음
(신설)	부칙(학교법인우석학원-000(2023.00.00)호) 이 규정은 2023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산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의 감액) ①정직에 대해서는 정직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 를 감한다. ②감봉에 대해서는 감봉기간 중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제34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의 감액) ①정직에 대해서는 정직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②현행과 같음
(신설)	부칙(학교법인우석학원-000(2023.00.00)호) 이 규정은 2023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장애학생지원규정」		
입안형태	□ 제 정		Ⅳ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장애학생지원센터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원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인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의 운영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 • 특별지원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장애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지며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구성에서 당사자 참여를 통한 다양화 필요 • 대학 내 장애학생을 위한 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당사자인 장애학생의 참여를 강화하는 관련 법령에 따르고자 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4항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기대효과	• 특별지원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장애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제공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 (포털 및 홈페이지)	반영 예정	
	다. 의견제출 유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반영 예정	
첨부자료	「장애학생지원규정」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장애학생지원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u>제6조(구성)</u>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생취업처장이 되고,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2009.10.20.,2014.11.16.) ③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u>(단서 신설)</u>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u>(항 신설)</u>	①~②현행과 같음 ③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u>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u>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장애학생 대표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대표 학생의 부재 시 위임된 다른 장애학생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u>(신설)</u>	부 칙 <u>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약칭: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3. 4. 19.] [대통령령 제33406호, 2023. 4. 18., 일부개정]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 044-203-6563

- 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대학의 장은 그 대학에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대학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부서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 ③ 특별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4. 18.>
- ④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 4. 18.>
1. 해당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
 2.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3. 4.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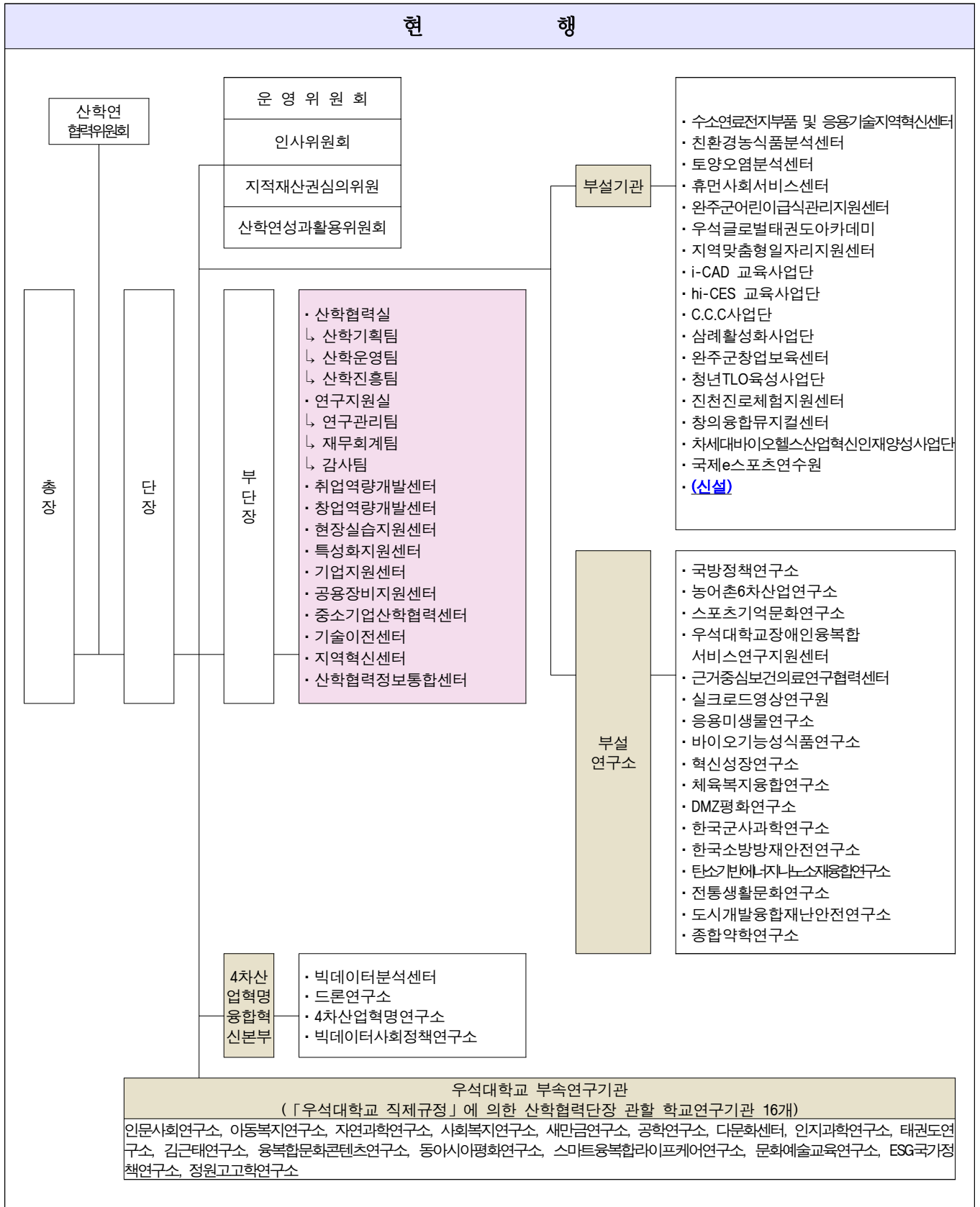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운영규정」		
입안형태	☐ 제 정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운영규정」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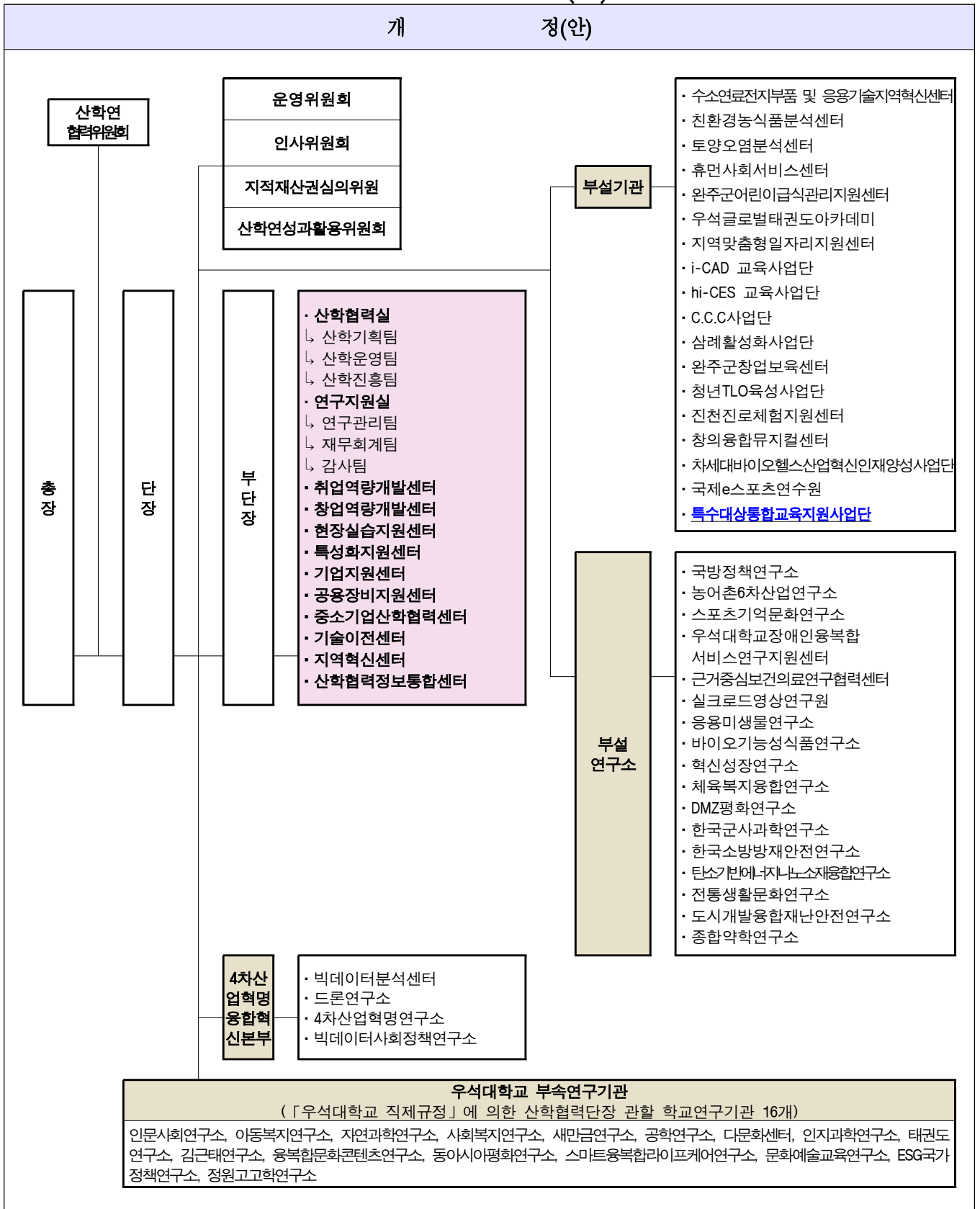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제4조(조직) ①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우석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직원 및 외부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1.7.1., 2013.1.16.) ②부단장은 우석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직원 및 외부전문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7.1., 2013.1.16.) ③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실, 연구지원실, 취업역량개발센터, 창업역량개발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특성화지원센터, 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공용장비지원센터, 기술이전센터, 지역혁신센터, 산학협력정보통합센터를 둔다. 산학협력실에는 산학기획팀, 산학운영팀, 산학진흥팀을 두고, 연구지원실에는 연구관리팀, 재무회계팀, 감사팀을 둔다. (신설 2011.7.1., 개정 2013.1.16., 2015.2.11., 2015.8.11., 2016.4.18., 2017.11.6., 2020.3.13., 2022.8.17.) ④단장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융합혁신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두며, 산하에 센터 및 연구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1.22.) ⑤산학협력단의 산하기관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부설기관(센터, 연구소, 사업단) 및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둘 수 있으며 [별표]와 같다. (개정 2011.7.1., 2013.1.16., 2013.10.1., 2014.8.29., 2014.11.6., 2015.1.6., 2015.2.11., 2015.2.27., 2015.5.13., 2015.6.5., 2015.8.11., 2015.10.28., 2016.4.18., 2016.6.17., 2016.6.23., 2016.10.1., 2017.4.11., 2017.11.6., 2018.1.1., 2018.5.25., 2018.11.7., 2018.12.20., 2019.1.22., 2019.3.7., 2019.5.24., 2020.3.13., 2020.5.13., 2020.7.16., 2021.3.11., 2022.8.17., 2022.10.13.) ⑥산학협력단에 총장이 지정하는 사회 및 학교 기업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16.) ⑦(신설2011.7.1., 삭제 2013.1.16.) ⑧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정보담당관을 두고 산학협력 관련 인적·물적자원 및 생산물 등 정보의 관리 운영을 총괄하도록 한다. (신설 2022.8.17.)	제4조(조직) ①~④ 현행과 같음 ⑤산학협력단의 산하기관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부설기관(센터, 연구소, 사업단) 및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둘 수 있으며 [별표]와 같다. (개정 2011.7.1., 2013.1.16., 2013.10.1., 2014.8.29., 2014.11.6., 2015.1.6., 2015.2.11., 2015.2.27., 2015.5.13., 2015.6.5., 2015.8.11., 2015.10.28., 2016.4.18., 2016.6.17., 2016.6.23., 2016.10.1., 2017.4.11., 2017.11.6., 2018.1.1., 2018.5.25., 2018.11.7., 2018.12.20., 2019.1.22., 2019.3.7., 2019.5.24., 2020.3.13., 2020.5.13., 2020.7.16., 2021.3.11., 2022.8.17., 2022.10.13., 2023. . .) ⑥~⑧ 현행과 같음
(신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운영규정」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운영규정」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



특수대상통합교육지원사업단 설치·운영 계획(안)

가. 사업단 설치, 운영의 필요성

- 전라북도 및 지역사회 내 특수체육(장애인 및 노인) 대상자로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특성 장애 연령별 등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특수체육(장애인 및 노인)지도자 양성 사업은 산·학·관 커플링 사업 시행을 통하여 대학과 장애아동, 장애인, 중장년 장애인 등과 관련된 기업체 등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도민의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과 삶의 질을 담당할 수 있는 특수체육(장애인 및 노인)지도자를 양성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산업체 등에게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함.
- 장애현장과 대학의 전문성을 연계하여 맞춤형 전문인력 역량을 높여 전라북도와 지역사회 내의 장애인 및 노인의 생활체육, 전문체육, 재활체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및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목표를 설정함.

○ 필요성

- 지역사회 내 사각지대에 놓여진 소외된 장애인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판단됨. 즉, 장애인 및 노인스포츠지도자를 양성과 배치 등으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사각지대에 놓여진 장애인들을 지역사회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함.
- 장애인 및 노인스포츠지도자 양성과정에 대한 교육체계 및 교육과정 운영은 경쟁력있는 질 높은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장애인 및 노인 인식개선에 앞서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차별, 인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환경조성 및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업/산업체 등 수요에 눈높이를 맞춘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전문인력의 역량강화가 필요함.
- 시대의 흐름 또는 변화하는 트렌드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육성이 필요함.
-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급속하게 변화되는 대면 또는 비대면 형태로 진행되는 교육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체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역량강화 역시 필요함.

나. 사업 운영개요

1) 사업목표

○ 4차산업시대에 맞는 장애인전문가 인프라 구축 및 양성

- 산학관 커플링 사업 홍보를 통하여 장애인 체육전문가 양성
- 산·학·관이 협력하여 취업 활성화
- 산학관 커플링 사업 홍보를 통하여 우수한 재학생 유치 및 교육
- 국가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준비 교육 지원

2) 주요사업

○ 4차산업시대에 맞는 장애인전문가 인프라구축 및 양성

가) 장애인체육전문가 양성(장애인스포츠지도사)

- 장애인 인구 증가로 인한 특성화된 융합 교육과정 운영 및 구축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의자료 개발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생 학술활동 지원

나) 노인체육전문가 양성(노인스포츠지도사)

- 고령화사회로 인해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특성화된 융합 교육과정 운영 및 구축
-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의자료 개발
-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생 학술활동 지원

다) 다학제간 융복합 재활전문인력 양성

- 재활, 교육, 체육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인적 재활전문가 양성
- 융복합 지식을 겸비한 직업능력평가 전문가 양성
- 전인적 재활서비스 상담 및 사례관리자(case manager) 인재 양성

라) 체육학과, 재활상담학과, 특수교육학과 간 공동커리큘럼 운영

- 참여학과 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커리큘럼 편성 및 개편
- 2023학년도부터 참여학과 간의 융합수업 운영으로 실질적인 교과 편성
- 참여학과 간 융합교육으로 미래를 목표로한 우수 인재 양성

마) 우수 장애인 및 노인 전문지도자 등 인적자원 확보 사업

- 장애인 및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 지원
- 장애인 및 노인 스포츠관련 학술활동(학회)을 위한 지원
-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 자격증 취득 및 학술활동 지원
- 학생 국내 관련기관 견학 및 실습 지원(강습회, 세미나 참석 등)
- 지역 언론매체와 현장지원을 이용한 특수체육 관련 분야 홍보 활동 강화

다. 운영조직의 구성

1) 운영조직 설치 필요성(설치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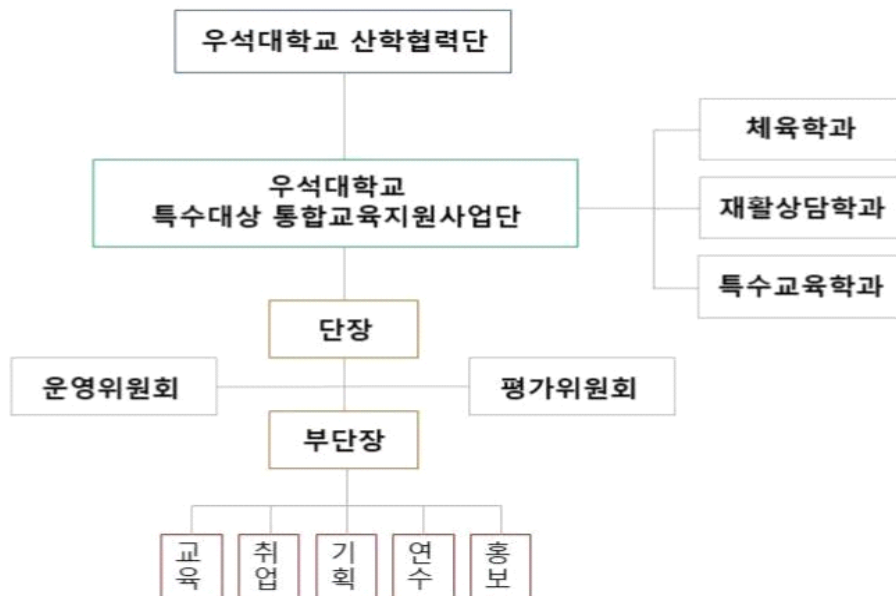
- “우석대학교 특수대상 통합교육지원단”운영위원회는 총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사업 참여교수, 기업체,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 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정기적인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사업 진행 방향 점검 및 보고 사항 청취 및 의결 사항 심의 통한 환류 체계 마련

○ 연구기관 참여

- 우석대학교 체육복지융합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세미나 개최 및 자격증 발급, 참여기업의 컨설팅 지원 등 체계 마련

2) 운영조직의 구성

조 직 도



가) 사업단장

소속	직급	성명	주요업무	비고
우석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조현철	사업총괄	

나) 전담직원

No	부서명	직급	성명	주요업무	비고
	특수대상통합교육지원사업단	연구원	김태빈		자격요건 등

3) 참여인력

No	소속	직급	성명	센터 내 역할	비고
1	체육학과	교수	조현철	사업단장	
2	재활상담학과	교수	김동주	사업부단장	
3	특수교육학과	교수	백종남	사업부단장	
4	체육학과	교수	이철원	사업부단장	
5	체육학과	교수	최덕환	사업부단장	
6	체육학과	교수	서연희	사업부단장	
7	체육학과	교수	김현륜	사업부단장	
8	재활상담학과	교수	정승원	사업부단장	
9	재활상담학과	교수	황의태	사업부단장	

라. 당해년도 사업계획

사업명	목표 및 주요 내용	비고
특수체육(장애인 및 노인) 지도자 및 장애인재활 전문인력 양성과정	○ 목 표 - 이론 및 실기 능력을 겸비한 장애인·노인 스포츠 지도자 전문인력 양성 - 융복합 지식을 갖춘 재활전문인력 양성 - 현장실습, 행정 등 장애인융합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체계 및 교육과정 구축 ○ 주요내용 - 전문 교육체계 및 교육과정 구축 및 운영 - 교육체계 확립 및 교육과정 개편 등 장애인융합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특수체육(장애인 및 노인)지도자 및 장애인재활 전문인력 인적 자원 인프라 구축	○ 목 표 - 기업/산업체 등 지역사회 내 장애인지도자 전문인력 배치 ○ 주요내용 - 양성된 특수체육(장애인 및 노인)지도자 인력을 기업과 산업체 등에 취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사각지대에 노출된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확보하기 위해 양성된 전문인력들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생활체육 등 다양한 영역에 인프라 구축 -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직업재활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특수체육(장애인 및 노인) 지도자 및 장애인재활 취업 준비사업	○ 목 표 - 지역 내 현장(장애인체육회, 복지관등)과 연계하여 산학협력 강화 -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을 제고 ○ 주요내용 - 산학운영위원회 운영 - 지역 내 기업/산업체(장애인체육회, 복지관, 참여산업체 등) 현장실습 - 취업캠프, 취업특강 - 졸업생 사후관리 연계구축 - 미참여기업/산업체 등 발굴 및 컨설팅 - 현장행정업무, 생활체육지도 등	

마. 당해 연도 추진일정

구분	사업	1/4	2/4	3/4	4/4
1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			
2	사업협약	✓			
3	수요조사 분석 및 요구분석 조사	✓	✓		✓
4	특수체육(장애인 및 노인)전문가 양성에 대한 설문 조사 및 수요조사	✓	✓	✓	
5	특수체육 전문가 양성에 특성화된 교육과정 보완 및 개편	✓	✓	✓	✓
6	특수체육 전문가 양성 전공기초과목 교육과정체계 시행	✓	✓	✓	✓
7	특수체육 전문가 취업특강		✓	✓	
8	특수체육 학회참관		✓	✓	
9	특수체육 전문가 양성 교재 개발		✓	✓	✓
10	창의적 특수체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제작			✓	✓
11	특수체육 전문가 자격증 취득대비 특별반 지원			✓	✓
12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
13	최종사업결과보고				✓

바. 당해 연도 센터운영 재정

1) 운영비조달계획

소요예산			조달계획		
항목		금액(원)	항목		금액(원)
항	목		항	목	
인건비		29,950,000	보조금		93,744,000
사업관리비		20,914,000	대학부담금		36,200,000
교육활동비		79,080,000			
합계		129,944,000	합계		129,944,000

2) 소요예산 세부내역

항목		금액(원)	산출근거	비고
항	목			
인건비		29,950,000		
교육활동비	연구시설장비	10,000,000		
	교재 개발비	6,000,000		
	교육프로그램 운영	8,730,000		
	국내 현장학습비	13,850,000		
	현장실습	9,000,000		
	취업능력강화지원	22,500,000		
	장학금(민간부담금)	9,000,000		
사업관리비	정산수수료	1,100,000		
	사업추진비	19,814,000		
합계		129,944,000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우석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학사관리팀		관련부서	국제교류원(글로벌교육지원센터)											
부서간 협의 결과	● 부서간 협의 완료 및 특이사항 없음														
대학평의원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글로벌교육지원센터가 담당하는 외국인 유학생 신입학시 입학 자격에 대해 국제교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학할 허가하고 있음 ● 이에 글로벌교육지원센터가 담당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재입학시에도 국제교류위원회의 재입학 자격 심의가 필요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국제교류위원회규정」 제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심의한다. 7. 글로벌교육지원센터가 담당하는 외국인 유학생 입학에 관한 사항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글로벌교육지원센터가 담당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재입학 자격 심사를 국제교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도록 함 - 국제교류위원회(글로벌교육지원센터): 재입학 자격 심사 등 - 재입학심사위원회(학사관리팀): 재입학 여석, 이수학점 등 ● 처리 절차 <table><tr><td>① 외국인 재입학 자격 심사 요청</td><td>② 외국인 재입학 자격 심사 및 심의</td><td>③ 외국인 재입학 심사 결과 회신</td><td>④ 재입학 심의</td><td>⑤ 재입학 처리</td></tr><tr><td>교무처 (학사관리팀)</td><td>국제교류위원회 (글로벌교육 지원센터)</td><td>국제교류원 (글로벌교육 지원센터)</td><td>재입학심사 위원회 (학사관리팀)</td><td>교무처 (학사관리팀)</td></tr></table>					① 외국인 재입학 자격 심사 요청	② 외국인 재입학 자격 심사 및 심의	③ 외국인 재입학 심사 결과 회신	④ 재입학 심의	⑤ 재입학 처리	교무처 (학사관리팀)	국제교류위원회 (글로벌교육 지원센터)	국제교류원 (글로벌교육 지원센터)	재입학심사 위원회 (학사관리팀)	교무처 (학사관리팀)
① 외국인 재입학 자격 심사 요청	② 외국인 재입학 자격 심사 및 심의	③ 외국인 재입학 심사 결과 회신	④ 재입학 심의	⑤ 재입학 처리											
교무처 (학사관리팀)	국제교류위원회 (글로벌교육 지원센터)	국제교류원 (글로벌교육 지원센터)	재입학심사 위원회 (학사관리팀)	교무처 (학사관리팀)											
기대효과	● 외국인 유학생 재입학 자격에 전문 심의 가능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 (포털 및 홈페이지)	해당사항 없음													
	다. 의견제출 유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해당사항 없음													
첨부자료	「우석대학교 학사운영규정」 개정(안) 산·구조문대비표 1부.														

「우석대학교 학사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재입학 심의 및 허가) ①재입학은 재입학심사위원회(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개정 2007.9.4.)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개정 2007.9.4., 2009.10.20., 2019.3.8.) ③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9.4.)	제6조(재입학 심의 및 허가) ①재입학은 재입학심사위원회(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u>다만, 글로벌교육지원센터가 담당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재입학심사위원회 심의 전에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개정 2007.9.4., <u>2023.00.00.</u>) ②~③ 현행과 같음
<u>(신설)</u>	<u>부칙</u> <u>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